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94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김성원·정동만·김태호

김선교・고동진・임이자

박충권 • 이인선 • 김정재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 지역"이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국에 산재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아직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경제적인 낙후가 심하므로 해당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그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 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 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5년 12월 31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	세 등의 감면)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	
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	
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	
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한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3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	
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	
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	
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	
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 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 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 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 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 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 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 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 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 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 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5년 12월 31 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 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구역 안에서 2030년 12월 31</u>
일

서 하는 사업 4. ~ 10. (생 략) ② ~ ⑩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